



시간강사 위촉 규정

규정번호	KTC-D-01
제정일자	2002.12.12
개정일자	2009.12.01
관리부서	교 학 처

1/4

강원관광대학 시간강사위촉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강원관광대학 시간강사 위촉의 합리화로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명칭) 이 규정은 강원관광대학 시간강사 위촉규정이라 칭한다.

제 3 조 (사무) 시간강사의 위촉은 학과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결정하며 이에 관한 사무관리는 교 학 처에서 관장한다. (개정 2009.12.1.)

제 4 조 (자격) ① 시간강사는 만65세 이하인 자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(개정 2009.12.1.)

1.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로서 해당 교과목을 전공한 자.
2. 교수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해당 교과목에 대한 교수자격을 인정받은 자.
3. 초급대학 및 대학에서 1년 이상 해당 교과목을 강의한 유 경력자.

② 제 1항의 자격에 미달되는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학과장의 추천 사유를 참작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1. 담당과목의 성질상 교육 및 연구경험을 가진 자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
2. 학력미달자라 할지라도 사계의 권위자로 인정될 경우

제 5 조 (구비서류) 시간강사를 위촉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. (개정 2009. 12.1.)

1. 이력서 및 사진 1매
2. 학력 및 경력증명서 1매
3. 근로계약서 1부. <별지 1>
4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서류



시간강사 위촉 규정

규정번호	KTC-D-01	2/4
제정일자	2002.12.12	
개정일자	2009.12.01	
관리부서	교 학 처	

제 6 조 (위촉기간) 시간강사의 위촉기간은 1학기간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제 7 조 (보수) 위촉한 시간강사에게는 그 출강 시간수에 따라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의무) 시간강사에 위촉된 자는 맡은 바 강의에 대하여 성실히 그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시간의 제한) 시간강사는 동일인이 9시간 이상을 담당할 수 없다. 다만, 다른 강사로 대체할 수 없을 경우 총장은 15시간 미만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. (개정 2009.12.1.)

제 10 조 (위촉의 시기) 시간강사는 담당과목의 개강일시 1주일 전까지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(개정 2009.12.1.)

제 11 조 (보칙)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필요시 총장이 결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시간강사 위촉 규정

규정번호	KTC-D-01
제정일자	2002.12.12
개정일자	2009.12.01
관리부서	교 학 처

3/4

<별지 1> (개정 2009.12.1.)

시간강사 근로계약서 계약서

강원관광대학총장(이하 “갑” 이라 한다)과 _____(이하 “을” 이라 한다)은 (는) 다음과 같이 시간강사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임용직급)

“갑” 은 ” 을"을 “본 대학” 의 외래교수(시간강사)로 임용한다.

제2조(계약기간)

“을” 의 임용 계약기간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로 한다.

제3조(담당시간) “을” 은 계약기간 중 _____에서 주당 시간의 강의를 담당한다.

제4조(강사료 및 지불방법)

① “을” 의 임용 계약기간 의 보수는 시간당 _____원으로 하며, 매월 5일에 지급한다.

② 주당__h 미만인 경우의 교통비는 주당 _____원을 “을” 에게 별도 지급하며, _h이상인 경우의 교통비는 주당 _____원을 “을” 에게 지급한다.

③ 본 대학에서 지급받는 보수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“을” 의 보수에서 공제 납부한다.

제5조(휴일 및 휴가) “을” 은 정해진 강의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“갑” 의 별도 승인 없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정해진 강의 일이 개교 기념일을 비롯한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 대학 관련 규정에 따라 “을” 은 별도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강의 장소와 업무) “을” 은 “갑” 이 지정한 교육장소에서 제3조에서 정한 주당 시간의 강의를 담당한다.

제7조(강의일과 담당시수) “갑” 과 “을” 은 시간표 작성 전에 상호 협의를 통해 강의 요일과 담당과목을 정하며, 주당강의시간은 제3조를 따른다.

제8조(위촉 및 해촉) ① “을” 이 “갑” 에게 제출한 위촉관련 서류 중에 허위사실이나 허위서류가 있을 경우에 “갑” 은 “을” 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때 “갑” 은 “을”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시간강사는 매학기 개강 전에 위촉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기타 계약조건) ① “을” 은 본 대학의 제 규정 등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



시간강사위촉규정

규정번호	KTC-D-01	4/4
제정일자	2002.12.12	
개정일자	2009.12.01	
관리부서	교학처	

여야 한다.

② “을” 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“갑”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③ “을” 은 제7조에서 정한 담당강의를 제외한 재학생 면담 및 생활지도, M/T 등 학과단위의 행사에 따른 학생 현장지도, 대학 입시업무 등의 별도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.

④ “을” 의 근로시간은 강의시간으로 한정하며, 강의준비시간, 성적산출 및 채점에 소요되는 시간 등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.

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 제 규정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.

⑥ 계약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법원은 본 대학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본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“갑” 과 “을” 이 각각 계약서 1통씩을 보관한다.

년 월 일

“갑” 강원관광대학총장 (인)

“을” 성명: (인)

주민등록번호:

소속학과(강의학과) :

연락처: